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9,804,266	10,494,128
일반회계	325,425,174	9,762,755
특별회계	24,379,092	731,373
기타특별회계	24,379,092	731,373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349,961	70,4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2,864	13,8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41,184	202,236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4,576,443	137,2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4,971	37,949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2,702,495	81,075
기반시설특별회계	78,963	2,369
섬진강댐특별회계	5,126,211	153,786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76,000	32,280

제 2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70,281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